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김위상 · 김태호
이성권 · 서천호 · 서일준
박충권 · 박정하 · 김소희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·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·질병·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,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 제7항).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4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의2(이자의 면제) ① ~ ③ (생략)	제16조의2(이자의 면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.	④ ----- -----제6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	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
① ~ ⑥ (생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 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 다 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 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 정하며, 그 기준은 제4항에서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6호----- ----- -----

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⑧·⑨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⑧·⑨ (현행과 같음)
---	---